중소·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신입 허용
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)

□ 개정취지

ㅇ 해외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 세제지원

□ 개정내용

종 전	개 정
□ 손금의 범위	□ 인건비 손금산입 범위 확대
 (원칙)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	ㅇ (좌 동)
(범위)판매한 상품·제품에 대한 원료 매입가액및 부대비용	해외 주재원 인건비 포함- (좌 동)
- 인건비	- 내국법인(중소·중견기업에 한정)이 해외법인(100%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)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* *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%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
-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	- (좌 동)

※ 중견기업: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 요건을 충족하고,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

□ 적용시기

○ 20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□ 문의처

-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(☎ 044-204-3127~3131)
- 중견기업연합회 정책팀(☎ 02-3275-2108)